

제 2405호
2015. 11. 05.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5-7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776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0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 구정운동을 위한 기구 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
- 조직변동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력 제고를 위해 담당사무 명확화

2. 주요내용

-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한 부서 간 분장사무의 합리적 재조정**
 - 대외교류 업무 담당부서 이관(기획예산과→총무과)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조례 제5조·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12조)
 -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 이관(복지지원과→자치해정과)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조례 제5조·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9조)
 - 자활지원 업무 담당부서 이관(취업지원과→사회복지과)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0조)
- 조직변동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사무 명문화**
 -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부서 이관사항 반영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분장 명

문화(시행규칙 제8조)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사무분장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 의전화:3396-4513, FAX:3396-4311, 메일:lsy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각 1부.

2. 신규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1호,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2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제6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법제, 지방의회에 관한사항(개정 2016.01.01.)

같은 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사항(신설 2013.02.18, 개정 2016.01.01.)

제7조 제2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4. (삭제 2016.01.01.)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취업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행정관리국) ① (생략)	제5조(행정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u>대외교류에 관한 사항</u>		
		(신설 2016.01.01.)		
		22. <u>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		
		(신설 2016.01.01.)		
제6조(기획재정국) ① (생략)	제6조(기획재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법제, 지방의회, 대외교류에 관한 사항	4. <u>법제,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u>			
	(개정 2016.01.01.)			
5. ~ 22. (생략)	5. ~ 22. (현행과 같음)			
23.취업정보 제공 등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3.2.18)	23. <u>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u>			
	(개정 2016.01.01.)			
제7조(복지환경국) ① (생략)	제7조(복지환경국) ① (현행과 같음)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3.15)	14. <u>삭제<2016.01.01.></u>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제6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제8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제12조 제13호를 삭제한다.

13. (삭제 2016.01.01.)

제15조의2 제10호를 삭제한다.

10. (삭제 2016.01.01.)

제19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0. (삭제 2016.01.01.)

제20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제21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p> <p>제5조(총무과)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p> <p>제6조(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략)</p> <p>제8조(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p> <p>제12조(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 2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p> <p>제5조(총무과)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1.01.)</p> <p>제6조(자치행정과) ①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1.01.)</p> <p>제8조(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1.01.)</p> <p>제12조(기획예산과)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제<2016.01.01.> 14. ~ 2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2(취업지원과)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10.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p> <p>11. ~ 12. (생략)</p> <p>제19조(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10.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p> <p>11. (생략)</p> <p>제20조(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7. (생략)</p> <p>제21조(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0. (생략)</p>	<p>제15조2(취업지원과)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삭제<2016.01.01.></p> <p>11. ~ 12.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현행과)</p> <p>10. 삭제<2016.01.01.></p> <p>11.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p> <p>제21조(여성가족과)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6.01.01.)</p>